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허가대상 행위 추가 〉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67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허가대상 행위 추가	2
2. 관계기관 의견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배숙의원 등 10명
2. 제 안 일 : 2025. 6. 25.
3. 회 부 일 : 2025.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허가대상 행위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북한주민의 상속·유증 재산 등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유증 대산 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하거나,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안 제18조제1항),

재산관리인이 금융회사 등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금융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법무부장관의 허가서 원본 또는 정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그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재산관리인이 신청한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등)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 ----- ----- -----.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생략) <u><신 설></u>	1.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유증재산등에 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라 한다)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1항에 따른 허가서의 원본 또는 정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그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재산관리인이 제출한 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산관리인이 신청한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현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상 재산관리인의 권한 등

현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남북가족특별법」”이라 함) 제13조¹⁾에서는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²⁾로 남한 내 재산(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유증 재산등”이라 함)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 1) 「남북가족특별법」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은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날”로 본다.
⑤ 재산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산관리인이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재산관리인이 상속·유증재산등을 부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위태롭게 하였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재산관리인이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懈怠)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2) 「남북가족특별법」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 상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항),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제15조)³⁾.

한편, 제18조⁴⁾에서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⁵⁾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⁶⁾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항),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항).

3) 「남북가족특별법」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남북가족특별법」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5)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6) 「남북가족특별법 시행령」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재산

2.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3.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4. 허가 신청 사유

5.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및 주요내용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산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검토의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남북가족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 제118조에 따라 보존행위나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을 하는 행위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함.

그런데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은 2019년 124억 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 원 상당으로 급격히 증가⁷⁾한 상황으로, 북한주민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허용된 보존행위 등⁸⁾을 명목으로 예금 인출 등 상속·유증재산등의 사용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어 재산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⁹⁾.

특히,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 중 금융재산은 재산관리인 명의의 계좌로 보관되어 관리될 수 있는데, 금융거래의 속성상 유용행위가 발생한 이후 해당 재산을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금융거래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음¹⁰⁾.

7) 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제영향분석서」, 2023, 5면 참조

8) 보존행위에는 상속·유증 재산이 건물인 경우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상속·유증 재산에 대한 소가 제기되는 경우 법적대응을 실시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음.

9) 법무부, “북한주민의 금융·신증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 2023년 5월 25일자 보도자료 참조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및 그 밖에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산관리인을 통한 유용행위 등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현행 「남북가족특례법」 제14조에서는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및 보수에 관하여 「민법」 제3절(부재와 실종)의 제26조¹¹⁾를 준용함으로써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준하여 법원이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등 재산관리인의 보존·관리 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10) 박동진, “북한 주민의 남한내 현금 상속재산의 관리제도”, 통일과 법률 2016, vol., no.25, 통권 25호, 2016.

11) 「민법」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개정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법제적 보완 측면에서, 개정안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시 법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액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¹²⁾를 참고하여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으로 법률에서 그 금액의 대략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국세징수법」 제113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체납 또는 정정보류 자료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은 재산관리인이 보존·개량 명목으로 일정 금액 이상(대통령령) 인출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대상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이 법무부장관의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되었으나, 현행법상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 등을 명목으로 허가 없이 재산을 임의 유용하는 등 재산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통해 재산관리인의 임무 위배를 예방하여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사실상 보존·관리가 불가능한 북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행법(「남북가족특별법」 제14조, 「민법」 제26조)상으로도 이미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관리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어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추후 담보를 통해 전보가 가능한 장치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추가적인 허가절차와 통지절차를 마련하여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과 달리 규율하는 방안의 적절성에 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
